

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1월 1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01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01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박용호과장)

가. 제안이유

조례제정 후 수년간 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인근지역 동종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타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(안 제11조)
 -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->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
- 장례식장 시설사용 요금 인상
 - 분향실, 안치실 : 32,000원 -> 53,000원
 - 접객실 : 96,000원 -> 160,000원
 - 염습료 : 80,000원 -> 130,000원
 - 특실(접객실) 부분 신설 : 200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천소영)

○ 본 조례안은

군이 직영하고 있는 **평창장례식장, 진부장례식장의 사용료 인상**에 관한 것으로
1일 또는 1회당 요금인상 변경 내용은

분향실, 안치실은 32,000원에서 53,000원으로

접객실은 96,000원에서 160,000원으로

염습료는 80,000원에서 130,000원으로 변경하고

그 외 특실(접객실)을 200,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는

강원도 내 조례시행 4곳과 비교하였으며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
바랍니다.

(단위 : 원)

	개정안	정선군	홍천군	화천군	삼척시
분향실(1일)	53,000	336,000	70,000 (관외150,000)	50,000 (관외100,000)	장례식장 1회 사용당 시설관리 유지비 100,000
접객실(1일)	160,000 (특실200,000)				
안치실(1일)	53,000	60,000	20,000 (관외40,000)	50,000 (관외100,000)	
염습료(1회/1구)	130,000	200,000	30,000	40,000	

○ 상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

개정안의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선군을
제외하고는 높게 확인됩니다.

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

인근지역 동종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한다 하였지만 장례식장의 이용이 그동안 대표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였던 만큼 개정이유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조례안 “별표 장례식장 시설사용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함.

[별표]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	특실(접객실)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	1일
평창 장례식장	40,000 (관외 53,000)	120,000 (관외 160,000)	40,000 (관외 53,000)	100,000 (관외 130,000)	150,000 (관외 200,000)
진부 장례식장	40,000 (관외 53,000)	120,000 (관외 160,000)	40,000 (관외 53,000)	100,000 (관외 130,000)	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을
“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
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	특실(접객실)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	1일
평창 장례식장	40,000 (관외 53,000)	120,000 (관외 160,000)	40,000 (관외 53,000)	100,000 (관외 130,000)	150,000 (관외 200,000)
진부 장례식장	40,000 (관외 53,000)	120,000 (관외 160,000)	40,000 (관외 53,000)	100,000 (관외 130,000)	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<u>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</u> 및 <u>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</u> 을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</u> 및 <u>「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」</u> ----- -----.</p>

현행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
평창장례식장	32,000	96,000	32,000	80,000
진부장례식장	32,000	96,000	32,000	80,000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

개정

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 :원)

시설명	분향실	접객실	안치실	염습료	특실(접객실)
사용기준	1일	1일	1일	1회/1구	1일
평창 장례식장	40,000 (관외 53,000)	120,000 (관외 160,000)	40,000 (관외 53,000)	100,000 (관외 130,000)	150,000 (관외 200,000)
진부 장례식장	40,000 (관외 53,000)	120,000 (관외 160,000)	40,000 (관외 53,000)	100,000 (관외 130,000)	

※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.